

독일의 반론권(상)

박윤희

서울시립대 강사

각위의 반론권을 비교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지난호 박윤희 씨의 글 「프랑스 반론권」에 이어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독일의 반론권」에 대한 박윤희 씨의 글을 (상) (하)로 나누어 연속 게재한다. 「독일의 반론권」 중 이번호에 게재되는 부분은 목차란 중 고딕체활자 부분이다.편집자 주

I. 연혁

독일에서의 언론의 자유(Freiheit der Rede)는 전통적인 용인주의적 관념, 즉 개인의 정신적활동과 그 발현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영미적 전통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영미식의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의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독일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공적 기능과 공적 책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¹⁾ 한 마디로 독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이중적 성격(Doppelkarakter)」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²⁾ 독일의 이러한 독특한 언론관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언론에 대한 검열과 억압의 연속, 20 세기 들어 행하여진 나치의 포정에 대한 반성³⁾에서 나온 현상으로 풀이된다⁴⁾.

독일언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450 년 구텐베르그가 인쇄기계를 발명한 이후, 모든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제도와 허가제도가 실시되었고, 18 세기 후반부터 19 세기 초반에 이르는 일련의 자유주의적 투쟁과정에서 독일의 언론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⁵⁾ 바로 이 시기에 바덴주에서 프랑스의 1822 년 출판법을 모델로 하여, 1831. 12. 28. 출판법⁶⁾을 제정하면서 관청에 의한 정정보정강제제도를 도입하였다(동법 §10). 연방차원의 보다 본격적인 반론권 규정은 개인과 관청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1874 년의 제국출판법(Reichspressegesetz vom 7. 5. 1874) 제 11 조⁷⁾로부터 유래한다. 동조항은 프랑스의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을 혼합하여 모방한 모습을 띠면서 정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 2 차 대전 이후 제정된 본(Bonn)기본법 하에서는 기본법 제 75 조 제 2 항에 의하여 출판과 영주에 관하여는 연방이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개괄적인 관할권만 가지고, 방송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 30 조, 제 70 조, 제 71 조, 제 74 조 등에 의하여 주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독일에는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반론권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⁸⁾.

기본법의 위 조항들에 따라 각 주에서 반론권규정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반론권의 양상은 정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1949 년 바이에른주에서 제일 먼저

반론권을 규정한 출판법이 제정되었고, 1958년 헤센주에서 「언론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이, 그리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1964년)와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1964년)에 이어서 1965년에는 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주, 짜-르란트주, 라민란트-팔츠주, 베를린 등이 반론권을 규정한 출판법을 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1966년 출판법을 제정하여, 현재 독일의 각주들은 반론권을 규정한 개별법규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⁹⁾. 한편, 새로운 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뉴미디어가 늘어나면서, 1980년대 들어 출판법과 방송법을 통합하여, 매체법으로 확대 개정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¹⁰⁾. 이러한 법들은 모두 주단위의 법으로서 각기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반론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독일의 반론권이 프랑스의 반론권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프랑스의 반론권이 일반적이고 경제적인 권리인데 비하여 독일 각 주의 반론권은 가치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이나, 논평, 진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실주장에 대하여만 반론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권리라는 것과¹¹⁾, 프랑스에서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에 대한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독일의 반론권은 각 주에 따라 인정범위, 무료게재의 대상, 청구기간, 절차 등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씩 달리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적용할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사건에서는 적용법규의 문제도 발생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띤다¹²⁾.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모델로 하였다고 알려져 있는¹³⁾ 1964년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출판법 가운데 반론권규정(§11)¹⁴⁾을 중심으로 하여, 독일에서 언론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는 함부르크, 바이에른주(수도: 뮌헨) 및 헤센주(수도: 프랑크푸르트)의 출판법 가운데 반론권규정(§11)을 연관시켜, 인쇄매체의 경우와 방송의 경우로 나누어 독일의 반론권을 살펴본다.

II.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권

1. 요건

(1) 주체(Anspruchsberechtigter)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언론보도의 사실주장에 관련된 자연인이나 공·사법상의 법인,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조합의 경우¹⁵⁾등이 모두 포함된다¹⁶⁾. 그밖에 관청(Stelle, 바이에른주에서는 Behörde라고 한다)도 반론권의 주체가 됨은 1831년의 바덴주의 출판법과 1874년의 제국출판법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기인한다¹⁷⁾. 반론권이 인정되는 관청의 예로는 연교 및 주정부, 각 행정관서, 법원, 검찰청, 연방 및 주의회, 교회등을 들 수 있다¹⁸⁾. 반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바, 외국인 개인과 외국관청 모두에게 인정되며, 국제기구의 구성원 및 그 기관도 동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¹⁹⁾.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도에 성명이 확실하게 지명 또는 거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독자가 유발기사²⁰⁾를 읽고 그가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문맥이나 그림을

통하여 특정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면 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인식가능성)²¹⁾. 유발기사에 언급된 자와 동명이인인 자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²²⁾. 일반독자들에게 특정인이 언급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것으로 반론권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사자의 반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상속인이나 배우자도 동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²⁴⁾ 반론문에 대한 제 3 자의 재반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성(Betroffensein)

(가) 반론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유발기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²⁵⁾. 「관련」이란 언론보도에 공표된 초장으로 인하여자신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보도된 사실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한다²⁶⁾ 유발기사에 의하여 청구권자 국유의 이해관계²⁷⁾가 문제된 경우를 포함한다²⁸⁾. 구체적인 경우에 누가 관련이 있느냐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바²⁹⁾, 대체로 일반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³⁰⁾. 즉, 관련성의 여부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나 정당의 활동이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보도내용 중에 거명되지 아니한 각 구성원은 개인적인 관련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³¹⁾. 마찬가지로 유럽사람, 흡연가, 사냥꾼 등과 같은 특정집단에 속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론권의 제기도 부인된다³²⁾ 유발기사에서 다수의 개인이나 관청이 관련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모두에게 반론권이 인정된다³³⁾. 그러나 이미 한 관련자의 반론에 의하여 유발기사의 사실주장이 반박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의 반론이익이 소멸하여 반론권을 주장할 수 없다³⁴⁾. 다만 처음의 반론권 행사가 충분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머지 관련자에 의한 보충적인, 이른바 추가적 반론은 인정된다³⁵⁾. 다만, 그 내용이 사소하거나 피엣말단적이어서는 아니된다³⁶⁾.

관련성에 관하여 바이에른주 출판법은 다른 주법들과는 달리 특히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동법 §10), 직접적인 관련성과 간접적인 관련성은 판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서, 바이에른주 법원들도 실무상으로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³⁷⁾ 「관련성」의 요건은 특정인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공격 받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³⁸⁾ 비록 언론보도가 특정인에 대하여 찬양과 칭찬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³⁹⁾. 즉, 유발기사에 의하여 본인이 언급만 되었으면 그것으로써 반론권의 주체는 되는 것이다⁴⁰⁾.

(나) 반론권자는 반론을 제기함에 있어서 자신이 유발기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⁴¹⁾. 예컨대, 자기가 문제된 물건의 제조자라든지, 사창가로 불리는 지역의 임차인이라든지 하는 것을 반론청구시에 밝혀야 하는 바, 이를 반론청구자의 진술의무라 한다⁴²⁾.

(3) 객체

인쇄매체에 있어서 반론권의 행사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한한다. 신문은 발행주기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신문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정기간행물⁴³⁾은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을 말하며, 주기의 원속성만 있으면 되고,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⁴⁴⁾. 즉, 일정기간동안에만 발행되더라도, 매일, 매월, 매년, 또는 계간별 등 정기적으로만 발행되면 정기간행물로서 인정된다⁴⁵⁾. 따라서 주기성이 없는 일반서적의 발간은 정기간행물이 아니나, 무크(mook)지와 같이 비록 불정기적으로 발간되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한 정기간행물로 인정된다⁴⁶⁾.

그밖에 통신사가 발행하는 통신문도 정기간행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⁴⁷⁾, 정기간행물로 인정되는 한 정기간행물의 부록이나 별첨지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⁴⁸⁾. 이들 정기간행물이 유료나 무료냐의 여부, 중앙지나 지방지냐의 여부, 또는 발행부담의 다과와는 상관이 없다⁴⁹⁾. 기본적으로 반론권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무료로 배포되고, 단지 내부회람용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반론권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⁵⁰⁾.

그러나 관청의 고지사항만을 게재하는 관보나 단순한 소내만을 다루는 공고지의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편집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더라도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⁵¹⁾.

(4) 반론의무자(Anspruchsverpflichteter)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의무자는 정기간행물의 출판인이나 발행인 또는 책임편집인이다⁵²⁾.

출판인은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편집한 인쇄물을 발간 배포한 자이고⁵³⁾, 발행인은 인쇄물의 발간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이다⁵⁴⁾. 그리고 책임편집인은 정기간행물에 실릴 자료를 자신의 권한으로 선정하고 편집하는 자⁵⁵⁾로서, 기사를 직접 작성하는 자 즉, 기자와는 다른 개념이다⁵⁶⁾. 이들 반론의 의무자들은 정기간행물의 간행요목에 발행단, 발행처등과 함께 게재되는 것이 원칙이며, 반론권자는 이들을 상대로 반론요청을 하게 된다. 즉 이들이 반론문의 수취인이 된다⁵⁷⁾. 만일 책임있는 편집인과 출판인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있는 시점의 책임있는 편집인 또는 출판인이 반론의무자가 된다(독일 민사소송법 제 265 조) 58)

(5) 반론의 대상(사실주장)

독일에 있어서 반론권의 대상은 단순히 기자에 의한 취재기사(Artikel)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주장이 들어있는 한 모든 종류의 언론보도에다 적용되며, 사실기사의 부수적인 진술에도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인정된다⁵⁹⁾. 반론권은 유발기사의 「사실주장에 대하여 사실주장의 방법으로」⁶⁰⁾만 행사할 수 있다⁶¹⁾. 이는 가치판단과 의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도영역에 대하여 반론권이 인정되는 프랑스의 반론권제도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면이다. 유발기사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에 있어 「사실주장」의 개념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나, 사실주장과 의견표명, 가치판단의 구별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서 무엇이 「사실」이냐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⁶²⁾.

1) 사실주장(Tatsachenbehauptung)의 요건

판례는 사실주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입증가능성, 역사성 및 명확성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① 입증가능성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하거나,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적 또는 내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⁶³⁾은 사실로서 인정된다⁶⁴⁾. 이를 입증가능성의 요건이라 한다⁶⁵⁾. 따라서 반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에는 외적인, 인식가능한 경과 뿐만 아니라, 동기⁶⁶⁾, 목적, 심리적 상태 등 정신생활의 내적인 경과 및 생각의 표현⁶⁷⁾도 그것이 외부로 표현될 때는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내적 · 외적 경과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보도될 필요는 없으며⁶⁸⁾, 단지 일반독자의 수준에서 읽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다만,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의견, 관점,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유발기사에 사실과 개인적인 의견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과 개인의 의견 중 어느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도의 핵심이 사실에 우위를 두고있으면 반론권이 인정되나, 개인의 의견에 우위를 두고 있을 때에는 사실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따라서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⁶⁹⁾

② 역사성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가 속하여 있는 사태, 사건, 경과, 관계(Verhältnis) 또는 상태로서, 이른바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⁷⁰⁾. 역사성이 반드시 진실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실이 진실이나 아니냐의 여부는 반론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론권이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압된 제도인데다가, 유발기사가 허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정정권과 구별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하여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에만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명확성

사실은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가 관련되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명확성의 요건이라 한다⁷¹⁾. 그러나 개별사건에서의 반론권의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주로 위에서 언급한 사실로서의 특징만으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는 한계선상의 것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사실주장의 사례들을 유형화시켜서 살펴본다.

1) 사실주장의 유형

① 객관적 발표

사실로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발표기사⁷²⁾와 그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 보도⁷³⁾이다. 이와 같은 유형들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발표⁷⁴⁾로 간주되어 사실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발표란 언론사가 스스로 취재한 내용의 발표를 의미할 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⁷⁵⁾.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공판이나⁷⁶⁾, 의회의 회기활동을 있는 그대로 진실에 부합되게⁷⁷⁾ 보도한 기사⁷⁸⁾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격언⁷⁹⁾이나, 기타 논리적 과학적 결과에 대한 최종추론⁸⁰⁾은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발표상의 사소한 것에 대한 반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도의 핵심이어야지 사소한 것에 대한 반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⁸¹⁾. 그러나 유발기사내용 가운데 들어 있는 인용문에 대한 반론은 인정되는데, 이 때 반론문은 언론사 자신의 주장을 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⁸²⁾.

그 밖에 전문가의 감정⁸³⁾이나 선사시대와 미래에 관한 예견⁸⁴⁾ 등에 대하여는 학술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유발기사의 표제나 가정 등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⁸⁵⁾

또 유발기사가 객관적 발표인 한 동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따지지 아니한다. 그것이 단지 유발기사에 관련된 자에게 모두 반론권을 인정한다는 반론권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고, 반론권의 제기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제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① 도화

인쇄매체에 있어서 반론권의 대상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진, 그림, 만화, 스케치, 몽타주 등 일종의 상형적인 표현인 도화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제국출판법의 규정이 기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화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기도 하였으나⁸⁶⁾, 현재의 통설과 판예는 사진, 그림, 만화 등 이른바 상형적 표현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⁸⁷⁾.

언론이 특정 사진을 게재할 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눈부위를 검은 테이프로 지우거나 가려서 게재하거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바, 이러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일반체자가 보아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⁸⁸⁾. 또, 언론에 게재된 사진이 통신사로부터 입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반론권 행사의 제척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⁸⁹⁾.

도화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반론문의 게재로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응되는 사진이나 만화, 그림으로도 반론문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다⁹⁰⁾

② 광고

독일에 있어서 광고에 대한 반론권의 인정 여부는 각 주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와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는 반론권을 인정하기는 하나 유료임을 명시하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베를린, 브레델,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메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짜-르란트주 등에서는 명문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바이에른주와 헤센주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각 주마다 규정이 달라 학설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바, 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긍정하는 견해는 ① 광고에도 사실주장은 포함될 수 있고, ② 관련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인에 관한 사보주장이 기사로 게재되었느냐, 광고로 게재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으며, ③ 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인간의 분쟁에 언론사가 부담하여 반론문을 게재하는 것은 자기 책임 없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반론권의 또 다른 요건인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① 언론사의 책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의 분쟁에 언론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현대민법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② 광고는 단지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은 편집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⁹¹⁾.

또 학자에 따라서는 언론사의 입장과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반론권자)와의 입장을 조화시켜 광고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인정하되, 그 비용은 반론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후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광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⁹²⁾.

(6) 정당한 이익

반론권자가 반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⁹³⁾. 이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민법상의 권리남용금지를 반론권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전술한 요건들이 반론권의 형식적인 요건들이라면,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반론권의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⁹⁴⁾.

다만, 「정당한 이익」이 무엇이나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질 것인 바,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발기사이든 반론문이든 그 내용이 본질적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아주 사소한것인 경우⁹⁵⁾, 반론문의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한 것인 경우⁹⁶⁾,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인 경우⁹⁷⁾, 사술적인 반론이어서 독자를 기망하는 경우⁹⁸⁾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소함」, 「무의미함」, 「불합리함」, 「사술적임」 등의 판단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하여야 하며⁹⁹⁾, 판단의 시점은 독자가 동반론문을 접할 수 있는 때, 즉, 게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¹⁰⁰⁾

인터뷰기사와 같이 사전에 반론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보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¹⁰¹⁾, 유발기사에 관련자의 입장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반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¹⁰²⁾.

반론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이 단순히 유발 기사를 중복 · 부연 설명하는 반론¹⁰³⁾, 유발 기사와 무관한 동떨어진 반론¹⁰⁴⁾, 언론 스스로 이미 정정한 기사에 대한 반론¹⁰⁵⁾, 단지 자기선전적이고 영업적인 반론¹⁰⁶⁾ 등도 반론의 정당한 이익이 부정 된다.

(7) 청구기간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각 주법마다 다르다. 바이에른주의 출판법은 청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헤센주의 출판법과 함부르크의 매체법은 단지

「즉시」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들은 유발기사가 게재된 이후 3달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권청구기간에 관하여 각 주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주에 따라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즉시」라고만 하고 있어, 이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아니하였는 바¹⁰⁷⁾, 1983. 2. 8.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거나 <즉시>라고 되어 있는 법문을, 반론권자가 유발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⁰⁸⁾. 따라서 「즉시」의 기간은 결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모델로 하고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출판법은 「유발기사가 게재된 후 늦어도 3개월 안에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② 5). 「유발기사가 게재된 후」는 형식적인 요건이므로 언제 반론권자가 그 보도를 알게 되었느냐에 관계 없이 공식적으로 공표된날, 즉,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반론권자가 발행일보다 앞서서 유발 기사를 보았더라도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계산하며, 반론권자가 발행 일보다 늦게 유발 기사를 보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¹⁰⁹⁾. 기간의 계산은 민법상의 일반원칙(독일민법 제 121 조 제 1 항)에 따른다.¹¹⁰⁾

독일 각 주의 반론권 규정은 외국인을 반론권자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도봉지방에 거주하는 반론권자를 위한 청구기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학자들로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¹¹⁾

2. 반론문

(1) 형식

독일에 있어서 반론문은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¹¹²⁾. 반론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형식-전화, 전신, 팩스, 우편등-으로 하여도 무방하나¹¹³⁾, 반론문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문서이어야 한다¹¹⁴⁾. 자필서명의 요건은 독일민법 제 126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서식의 필수요건으로서¹¹⁵⁾, 반론문을 수취한 언론사는 서명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필서명의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다¹¹⁶⁾ 글을 쓸 줄 몰라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주로써 대신할 수는 있어도 타인이 이를 대행할 수는 없다¹¹⁷⁾. 외국인인 경우에도 반론문의 내용은 본인의 구술에 의하여 대리인이 대신 작성, 또는 독일어로 번역하여 줄 수 있으나¹¹⁸⁾, 서명만큼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한다¹¹⁹⁾.

반론문은 반드시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구술에 의하여, 또는 본인이 자국어로 작성한 반론문을 번역하여 반론의 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론문의 형식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언론사가 반론문을 수령한 즉시 다음 호에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론문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반론문의 형태로 준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²⁰⁾.

반론문의 길이는 유발기사의 분량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바¹²¹⁾, 이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유발기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¹²²⁾.

(2) 내용

반론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발기사에 대응하는 본인의 사실주장을 담은 내용이고, 또 하나는 유발기사가 불충분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이다¹²³⁾. 두 가지 내용 모두 반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유발기사의 내용에 한정하여 본인의 주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¹²⁴⁾.

반론문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것에 관하여 법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반론문의 내용 중에 ①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짜와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요약 함축되어 있어야 하고¹²⁵⁾, ② 본인이 유발기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뒤¹²⁶⁾, ③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유발기사의 보도내용 범위 내에서¹²⁷⁾ 사실적으로 서술할 것이 통상적으로 요구된다¹²⁸⁾. 그밖에 반론문의 내용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나¹²⁹⁾,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거나¹³⁰⁾,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¹³¹⁾ 반론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게재

반론문은 반론의무자가 반론문을 수령한 즉시 아직 인쇄가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호에, 유발기사가 실렸던 동일지면, 동일위치에, 동일 활자로, 침묵없이 게재되어야 한다¹³²⁾

1) 즉시, 다음 호에 게재

반론문은 반론의무자가 반론문을 수령한 후 즉시 바로, 다음 호에 게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바로 다음 호라 함은 아직 인쇄가 완료되지 아니한 호수를 의미한다¹³³⁾. 즉, 반론문이 반론의무자에게 도착된 시점이 다음 호가 이미 인쇄가 끝난 이후이면 그 다음 호에 반론문이 게재된다는 것이다¹³⁴⁾. 반론문이 반론의무자에게 도착된 시점은 등기우편상의 수령확인서로 입증된다¹³⁵⁾

2) 동일지면

반론문은 유발기사가 게재되었던 지면과 같은 지면, 같은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지면, 동일위치는 형식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발기사가 정치면에 실렸으면, 반론문도 정치면에, 사회면에 실렸던 것은 사회면에 실릴 경우에는 대체로 동일가치를 지닌 지면으로 간주하여 반론문의 정당한 게재로 인정 받는다¹³⁶⁾. 다만, 유발기사가 실렸던 지면과 다른 지면으로 반론문을 옮겨 실을 경우, 정기간행물의 내용목차에서 반론문이 실려 있는 지면을 명기하여야 한다¹³⁷⁾. 반론문을 게재할 때에는 「반론문」이라는 표제를 달아야 한다¹³⁸⁾. 이는 유발기사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자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도록 제목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¹³⁹⁾. 반론문은 어디까지나 반론문의 형식으로 게재하여야지 독자투고나 인터뷰, 기타 반론권자의 이익을 위한 취재기사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반론문의 게재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¹⁴⁰⁾

3) 동일활자

반론문은 유발기사와 동일한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¹⁴¹⁾, 동일활자라 함은 활자의 크기와 종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¹⁴²⁾ 동일활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반론문 게재가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반론문의 재게 재명령이 내려진다¹⁴³⁾. 반론문의 자수가 유발기사의 자수와 상응하고, 편집상 동일한 구역에 인쇄하였더라도 반론문을 현저하게 작은 활자로 한 경우에는 유발기사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¹⁴⁴⁾

4) 침묵없이 게재

반론문은 반론권자가 작성한 원지 그대로 침묵없이 전제하여야 한다¹⁴⁵⁾ 반론문의 내용 가운데 유발기사와 무관한 내용이나 형사 처벌적인 내용, 기타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게재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언론사가 함부로 반론문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덧붙일 수는 없다¹⁴⁶⁾. 반론문의 일부게재는 「전부 아니면 전무」¹⁴⁷⁾의 원칙에 따라 반론문을 게재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¹⁴⁸⁾. 반론문의 게재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다만, 광고에 대한 반론의 경우에는 주에 따라 유료로 인정될 수 있음은 전속한 바와 같다.

5) 편집상의 주석

반론문의 게재와 함께 언론사측에서는 동 반론문에 관한 설명이나, 변명 등 편집상의 주석을 달 수 있다¹⁴⁹⁾ 다만, 반론문 내에는 첨가할 수 없고, 반론문과 별도로 또는 반론문의 앞뒤로 주석임을 표시하고 게재할 수 있을 뿐이다¹⁵⁰⁾ 이러한 편집상의 주석이 인정되는 이유는 반론권이 형식적인 권리로서 반론문을 게재하는 언론사가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없이 곧바로 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측에도 유발기사에 관한 변명이나 설명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¹⁵¹⁾. 이와 같은 주석과 반론문이 함께 게재됨으로써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결과적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¹⁵²⁾

(4) 배포범위

반론문이 게재된 정기간행물의 배포범위는 기본적으로 유발기사가 배포되었던 지역에 한한다. 다만 반론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도 부록이나 별첨(Beilagen)의 형식으로 정기간행물과 함께 배포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반론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¹⁵³⁾

3. 법적 절차

(1) 적용법규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적용법규는 독일민법 시행법 제 38 조(§ 38 EGBGB)에 따라 출판물의 발행지법이 적용된다¹⁵⁴⁾ 즉 유발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주의 출판법에 따르게 된다. 반론권자의 주소지도 반론의무자의 주소지도 적용법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단지 유발 기사를 게재한 출판물의 발행지법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권자는 유발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법에 따라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동법에 따라 제반 법적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발행지(Erscheinungsort)란 정기간행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곳으로서¹⁵⁵⁾, 일반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가 된다¹⁵⁶⁾. 그곳에서 출판물이 독자들에게 배포되고 상인들에게 송달되는 것이 보통이나, 설사 출판지와 배포지가 다르더라도 출판지가 발행지로 된다¹⁵⁷⁾ 독일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는 일반적으로 일목요연하고 완벽한 발행요목이 실려 있어 그것을 보면 발행지와 발행자, 발행일, 인쇄지를 쉽게 알 수 있다.

(2) 소송절차

반론문의 게재가 반론의무자에 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거절되었을 경우, 반론권자는 일반법원에 반론문 게재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반법(출판법, 언론법, 방송법, 매체법 등)들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¹⁵⁸⁾. 바이에른주 출판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반론권에 관한 소송절차로서 가처분절차를 채택하고 있다¹⁵⁹⁾.

반론권 소송의 토지관할은 반론권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책임있는 편집자를 상대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12 조와 제 13 조가 적용되고¹⁶⁰⁾, 출판사나 방송국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17 조가 적용된다¹⁶¹⁾. 민사소송법 제 29 조상의 채무 이행지 관할이나 제 32 조상의 불법행위지 관할은 반론권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론권 소송의 사물관할은 지방법원에 속한다. 반론권소송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법원에서는 관할하지 아니한다. 합의부에서 할 것이냐, 단독판사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348 조의 규정상 단독판사가 할 수도 있으나, 동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특히 어려운 소송)이 종종 존재하고, 반론권은 특수한 사건이어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합의부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전담재판부로서 언론부를 두고 있다.

(3) 법원의 심리절차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는 단독변론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민사소송법 제 937 조 제 2 항), 반론권소송에 관한 한 구두변론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¹⁶²⁾. 특히 반론권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937 조에서 말하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¹⁶³⁾.

본소소송 절차에서는 사실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반면, 가처분절차에서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소명으로 족하다(민사소송법 제 294 조 제 2 항, 제 920 조, 제 936 조). 따라서 반론권 소송에서도 반론청구자는 반론권의 요건들을 소명하면 된다. 소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인식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¹⁶⁴⁾. 소명자료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94 조 제 2 항). 그러한 것으로는 문서¹⁶⁵⁾, 재정증인등을 들 수 있다¹⁶⁶⁾.

반론권 소송에 관한 법원의 재판형식을 특별히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반론문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구두변론을 거치기 때문에 판결의 형식을 취하며, 예외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한다.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가 가능하며,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가능하다.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는 병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28 조, 제 936 조, 제 888 조가 규정 하는 비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인 소위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반론문의 게재를 강제할 수 있다. 간접강제의 방법으로는 6 월 이하의 강제구금 또는 5 만마르크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강제집행방법은 손해배상금의 부과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민사소송법 제 693 조)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4. 언론법상의 그밖의 청구권과의 관계

출판이나 방송의 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들은 반론권외에도 각종 중지청구권과 정정/취소청구권, 배상청구권(Anspruch auf Ersatz) 등을 행사할 수 있다¹⁶⁷⁾.

중지청구권에는 이해관계인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부당한 사실주장에 대한 중지청구권¹⁶⁸⁾과 비평의 한계를 넘는 가치판단의 중지청구권¹⁶⁹⁾이 있는 바¹⁷⁰⁾, 중지청구권은 가처분절차¹⁷¹⁾뿐만 아니라 통상의 소송절차를 통하여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권 제도와 차이가 난다¹⁷²⁾ 이해관계인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부당한 사실주장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청구권과 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단지 통상적인 소송절차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청구권들과 반론권이 서로 다른 점은 그 실현을 위한 소송절차의 종류 뿐만이 아니라, 반론권은 언론보도에 관련된 자는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하여, 이들 청구권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또, 언론의 보도가 허위이거나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론권은 유발기사가 진실이나, 허위이나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는 반면, 이들 청구권은 본소심리에서 원고가 허위를 입증하거나, 피고가 진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청구권과 반론권은 동시에, 또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연이어 행사할 수 있다. 즉, 우선 반론권과 중지청구권을 동시에 주장하고, 그것이 가처분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취소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만 다른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반론권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바¹⁷³⁾, 이해관계인이 어렵지 않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위경료청구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긴박성이 덜 인정되기 때문이다¹⁷⁴⁾ 물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받은 침해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반론제기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그러하다¹⁷⁵⁾.

반론권을 제기하여 반론문이 게재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소에 대한 중지청구나 취소청구의 사후적인 주장을 배제하지는 아니한다¹⁷⁶⁾. 그러나 반대로 취소가 공표된 후에는 반론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

1) Dieter Stammer, Die Presse als soziale und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ion(이하 Die Presse 라 함), München , C. H. Beck, 1971, 155 쪽.

2)자세한 것은 Bleckman, Staatsrecht , 663~670 쪽; Ekkehart Stein, Staatsrecht(이하 Staatsrecht 라 함), 9thed., Tübingen:J. C. B. Mohr, 1984, 217 쪽; Leibholz/Rinck, Kommentar, 176~199 쪽 참조, Karl Doehring,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하 Staatsrecht 라 함), Frankfurt am Main : Alfred MetznerVerlag, 1984, 284 ~ 285 쪽.

3)1933 년부터 1945 년에 이르는 나치시대는 독일의 언론역사상 입헌주의적 가치가 철저히 붕괴된 시기였다. 1933 년 긴급명령으로 효력이 정지된 언론의 자유는 제국문화평의회법(Reichskulturkammergesetz)과 주업법(Schriftleitergesetz) 등으로 이어지는 제반조치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는 더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닌, 국가적 직무의 한 형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고, 언론은 '총통이 다루기 쉬운 시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Helmut Kohl,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이하 「Press Law)라 함), in Lahav ed., Press Law in Modern Democracy, 1985,185 쪽.

4)Wolfram Sielmann, Kampf um Meinungsfreiheit im deutschen Konstitutionalismus(이하 Kampf um Meinungsfreiheit 라함), Strassburg N. p Engel Verlag, 1986, 173 쪽.

5)자세한 것은 Chirstian Starck, "Meinungs-und Wissenschaftsfreiheit"(이 하 "Meinungsfreiheit"라 함), in Festchrift für Wolfgang Zeidler, Berlin : Walter de Gruyter, 1987 1539~ 1552 : Löffler /Wenzel /Sedelm-eier, Presserecht Kommentar (이하 Kommentar 이라 함), Bd I,München : C. H. Beck, 1983, 2~42 쪽 참조.

6)Presserecht 를 출판법으로 번역한 것은 당시의 법이 출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이하 준청에서는 Presserecht 가 출판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출판법'으로, 출판과 방송을 모두 규정한 경우에는 '언론법'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출판과 방송은 물론, CA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까지 모두 규정한 법률인 Medienrecht(또는 Mediengesetz)는 '매체법'으로 번역한다.

7)제국출판법 제 11 조(반론장재청구권) (1) 정기간행물의 책임편집인과 발행인은 그 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에 의하여 피해받은 개인 또는 기관의 반론문을 게재할 의무를 진다. (2) 피해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보도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거나, 반론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업적 이익만을 위한 광고인 경우에는 반론문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 반론들이 유발기사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론은 사실진술에 국한되며, 가유적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반론문은 서면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늦어도 보도 후 3 일 이내에 책임편집인이나 발행인에게 반론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3) 반론문은 제출된 직후의 아직 인쇄가 완료되지 아니한 호에 유발기사가 게재되었던 동일한 위치에 동일활자로 첨열되지 아니하고 실려야 하며, 독자투고 형식으로 게재되어서는 아니된다.

(4) 반론청구권외 집행은 일반재판에 의하며, 법원은 제 3 항의 방법으로 반론문을 보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안소송절차는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가학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연교,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판에 관한 진실에 충실한 보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연방차원에서 통일적인 반론권규정을 두고자 1952 년 연방내무성이 작성한 차안(Referentenentwurf des Bundesinnenministeriums von 1952, 일명 Lüders-Entwurf)을 비롯하여, 1963 년과 1974 년에 역시 내무자가 주관하여 연방언론법 모범초안(Modellentwürfe)을 만들었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동초안은 1960 년대 당시 여러 주의 언론법제정에 영향을 미쳐 대부분 동초안의 범위내에서 언론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상도한 바와 같이 언론의 관할권을 주에 부여한 기본법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연방차원의 언론법제정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각주에서의 출판법 제정과 그에 따른 반론권 규정은 Members of the Staff of the Library of Congress, Right to Reply under the Laws of Franc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Italy(이하 Right to Reply 라 함), Washington ;The Library of Congress, 1976, 7~9 쪽 : Seitz /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295~331 쪽 :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515~525 쪽 참조.

10)예를 들어 니더작센주는 1984 년에, 바덴비르템베르크주는 1985 년에 주매체법(Landesmediengesetz)을 제정하여 반론권 규정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였다.

11)Karl Egbert Wenzel, "Nochmals Grenzen des Gegendarstellungsanspruches" (이하 "Nochmals"라 함), AFP, 1971, 161 : Rolf Groß, "Zum Gegendarstellungsanspruch " (이하 "Gegendarstellungsanspruch "라 함), DVBl, 1981, 247 ;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 287 쪽 .

12)Karl Egbert Wenzel, Das Recht der Wort-und Bilderichterstattung(이하 Das Recht 라 함), 3. Aufl., Köln ; Dr. Otto Schmidt KG, 1986, 415 쪽.

13)박용상, "일반적 고해", 10 쪽 :양삼승, 「정보도청구권일법률적 측면에서의 고해일」(이하 법률적 측면이라함), 언론중재, 1983 겨울, 28 쪽.

14) B-WPrG, § 11 [Gegendarstellung]

(1)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und der Verleger eines periodischen Druckwerks sind verpflichtet, eine Gegendarstellung der Person oder Stelle zum Abdruck zu bringen, die durch eine in dem Druckwerk aufgestellte Tatsachenbehauptung betroffen ist. Die Verpflichtung erstreckt sich auf alle Nebenausgaben des Druckwerks, in denen die Tatsachenbehauptung erschienen ist.

(2) Die Pflicht zum Abdruck einer Gegendarstellung besteht nicht, wenn die betroffene Person oder Stelle k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Veröffentlichung hat, wenn die Gegendarstellung ihrem Umfang nach nicht angemessen ist oder bei Anzeigen, die ausschließlich dem geschäftlichen Verkehr dienen. Überschreitet die Gegendarstellung nicht den Umfang des beanstandeten Textes, so gilt sie als angemessen. Die Gegendarstellung

muß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und darf keinen strafbaren Inhalt haben. Sie bedarf der Schriftform und muß vom Betroffenen oder seinem gesetzlichen Vertreter unterzeichnet sein. Der Betroffene oder sein Vertreter kann den Abdruck nur verlangen, wenn die Gegendarstellung dem verantwortlichen Redakteur oder dem Verleger unverzüglich, spätestens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r Veröffentlichung, zugeht.

(3) Die Gegendarstellung muß in der nach Empfang der Einsendung nächstfolgenden, für den Druck nicht abgeschlossenen Nummer in dem gleichen Teil des Druckwerks und mit gleicher Schrift wie der beanstandete Text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abgedruckt werden, sie darf nicht in der Form eines Leserbriefs erscheinen. Der Abdruck ist kostenfrei. Wer sich zu der Gegendarstellung in derselben Nummer äußert, muß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4) Für die Durchsetzung des Gegendarstellungsanspruchs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Auf Antrag des Betroffenen kann das Gericht anordnen, daß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und der Verleger in der Form des Absatzes 3 eine Gegendarstellung veröffentlichen. Auf dieses Verfahren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über das Verfahren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anzuwenden. Eine Gefährdung des Anspruchs braucht nicht glaubhaft gemacht zu werden. Ein Hauptverfahren findet nicht statt.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nicht für wahrheitsgetreue Berichte über öffentliche Sitzungen der gesetzgebenden oder beschließenden Organe des Bundes, der Länder und der Gemeinden (Gemeindeverbände) sowie der Gerichte.

15) 여기에는 등록된 사국, 주식회사, 유한회사, 공동체, 공사법상의 재단, 공법상의 기구, 상법상의 조합, 각종 연합회, 민법상의 인적 사단, 노동단체, 정당, 개별공장을 비롯하여, 설립자인 법인이나 정당, 상인단체, 지역단체(Bezirksverband) 등이 모두 포함된다. OLG Hamburg B. 10. 2. 82, AfP 82, 232; OLG Hamburg B. 18. 10. 77, ArchPR 77 (XX II) 46;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39.

16)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1 항, 함부르크 출판법 제 11 조. 독일 민사소송법 제 50 조 제 2 항에 의하면 덕리능력 없는 사단은 민사소송에서 피고만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OLG Hamburg U. 17. 2. 77, AfP 79, 158; OLG München U. 20. 6. 86, 21 U 2528 /86).

17)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14~ 115.

18) Löffler, Handbuch, 문단번호 39 ~40.

19) Seitz /schmidt /sche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61.

20) 역자에 따라서는 원문기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본정에서는 용어통일을 위하여 이하 유발기사라고 한다.

21) BGH U. 9. 4. 62, NJW 63, 1155, OLG München U. 31. 7. 74, ArchPR 74(XIV) 112.

22) OLG Hamburg B. 1. 9. 75, ArchPR 75 (XX) 45~46; OLG Hamburg U. 19. 1. 86, AfP 86, 137.

23) Groß, "Gegendarstellungsanspruch", 250 쪽

- 24)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533 쪽.
- 25)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1 항, 함부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바이에른주 출판법 10 조.
- 26) OLG Hamburg B. 10. 2. 82, AfP 82, 232 : OLG Frankfurt U. 29. 3. 84, AfP 84, 225.
- 27) 원유의 이해관계란 극장 총감독의 경우 그 극장의 상태나 자신이 고용한 배우들의 연기가 비난받을 때, 호밀지배인의 경우 그 호텔이 비난받을 때(OLG Hamburg U.7. 6. 73, MDR 73, 1028), 신문발행인의 경우 기사에서 신문과 발행인이 비난받을 때(OLG München U. 29. 8. 88)등이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들로서, 권유의 이해관계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주로 그 기관이나 관공의 장에게 인정된다(OLG München U, 20. 6. 86 LG Köln 16. 8.88) .
- 28)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67.
- 29)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개별적 관련성'에 대하여"유발기사의 보도가 자신의 이익범위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명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더라도, 보도된 사실과 개별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피해자이므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OLG Frnkfurt U. 29. 3. 84, 16 U 1.
- 30)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44.
- 31) OLG Frankfurt U. 26. 3. 84, AfP 84. 225.
- 32)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537 쪽.
- 33)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문단번호 44.
- 34)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96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29 ; OLG Hamburg B. 23. 9. 83, AfP 83, 475, LG Oidenburg U. 26. 9. 85, AfP 86, 299.
- 35)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69 : BGH 3. 15. 11. 83, NJW84, 1102 ; BVerfG B. 7. 12. 76, BVerfGE 43, 130.
- 36) LG Oidenburg U. 26. 9. 85, AfP 86, 299 : OLG Hamburg B. 23. 9. 83, AfP 83, 475.
- 37)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70.
- 38) Groß, Presserecht, 162 쪽.
- 39)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64.
- 40)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 II 문단번호 45.
- 41)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51 쪽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74 : OLG München . 19.11.76 AfP 77, 240 : LG Hamburg U. 20.9.85, AfP 87, 631.
- 42)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508 , OLG Hamburg B. 29.10.71, ArchPR 71 (XVI) 93 ; LG Wiesbaden B. 22.2.83 MDR 83, 759.
- 43) 바이에른주법은 '신문과 잡지(Zeitungüund/oder Zeitschrift)'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타주의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동법 §10), 단지 잡지의 요건으로는 다양성(Mannfaltigkeit)이 요구되므로, 관보와 같이 일방적인 공지사항만을 다루는 것은 잡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것은 Seitz/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59~161 참조
- 44) Köbl, Entgegenungsrecht, 1109 쪽.

- 45) Seitz /schmi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59.
- 46) Groß, Presserecht, 161 ~162 쪽.
- 47) OLG Frankfurt B. S.7.83, 16 W 39. 동사건에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통신사가 회원언론사에게 발행 배포하는 통신문도 정기간행물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Löffler, Handbuch, 문단번호 17 참조.
- 48) Löffler /wenzel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11 문단번호 72
- 49) OLG Hamburg U. 8.2.79, AfP 79, 400 : BGH U.9.2.82, NJW 82, 1805.
- 50) OLG Köln U. 22.3.77 : Löffler /wenzel /sedelmeier, Kommentar, §11 문단번호 72 에서재인체.
- 51) Seitz /schmi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280~281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0.
- 5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1 항, 함부르크,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 53)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55.
- 54)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80.
- 55) 우리나라의 편집국장에 해당되나, 대형 언론사의 경우 분야별로 편집국장이 여러 명 있으므로, 그 가운데 다시 책임편집국장을 두는바, 이를 통상 책임편집인이라 부르고 있다.
- 56) 엄밀한 의미에서 책임편집자는 반론문의 지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일반인이 그를 이행요목(Tmpressum)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편집자에 대한 반론권청구를 정당하게 인정하여 주고 있다. OLG Galle U. 5. 8. 87, 13 U 140. 더구나 연방대법원은 "책임편집인은 편집감독의 소홀로 발생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책임편집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BGH U. 7.12.76.
- 57) 주필을 상대로 반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 바,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 OLG München U. 17 4. 72 AfP72, 278~279 : OLG Köln U.18. 10. 83 MDR 84, 869.
- 58) OLG München U 18. 9. 72 ArchPR 72(XVII)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54
- 59) 바덴-뷔르템데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함부르크,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 60) §10 I 1 BerlPrG; §10 I HessPrG; §11 I 1Bad-WürttPrG, BremPrG, HambPrG, NdsPrG,NRWPrG, Rhl -PfPrG, SaarlPrG, Schl - HPrG.
- 61) Löffler, Handburh, 109 쪽.
- 62) Seltz /schmi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295~296 ;Wenzel, "Nochmals",161~163 쪽. 베를린고등법원은 '사실'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아니하자, "공표된 진술이 사실이나, 의견이나, 가치판단 이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하여 반론권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OLG Berlin u. 18.5.84, 9u 565.
- 63) Brockhaus Enzyklopädie Bd. 18, 1973, 246 쪽.
- 64) OLG Frankfurt U 2. 3. 82, 8 U 177.
- 65) BGH U. 30. 5. 74, AfP 75, 804 ; BGH U. 27. 1.87, NJW 87, 829 : BGH U. 22.10.87, NJW 88, 1589 ;BGH U. 20.12.88, AfP 89, 456.

- 66)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관련된 자의 행동양식의 동기에 관한 진속은 단순한 추측의 표현이 아니라 내부적사실에 관한 주장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동기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하였다. OLG Frankfurt U. 2. 3. 82, 8 U 177.
- 67) BGH U. 30. 5. 74, AfP 75, 804 : OLG MünchenU. 11. 7. 83, 21 U 2514.
- 68) Wenzel, Das Recht, 16 쪽.
- 69) BGH U 17 2. 87, AfP 87, 502 ; BGH U. 12. 5.87, NJW 87, 2225.
- 70) 자세한 것은 Seitz/Schmidt/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11 참조.
- 71) BGH U. 30. 5. 74, AfP 75, 804.
- 72) BVerfG B. 3. 6. 80, BVerfGE 54, 208.
- 73) OLG München U. 29. 7. 77, AfP 78, 27 OLG München U. 4. 4. 77, 21 U 4510~4576.
- 74) BGH U. 30. 6. 77, NJW 78, 371 , OLG MünchenU. 12. 2. 79, 21 U 2782.
- 75)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0 쪽 , OLG Köln U. 2.7.85, 15 U 127. 동 판결에서 쾰른고등법원은 "장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가 제기될 수 있는 사실들이 장관에 의하여 주장된 경우. 동 장관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장관의 정책도 공식적인 발표임을 인정하였다.
- 76) OLG Hamburg U. 19.8.76, AfP 77, 397 ~ 398.
- 77)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담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정치단체를 나열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회의에 관한 보도는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OLG Karlsruhe B. 3. 2. 84, 13 W 20.
- 78) OLG Düsseldorf B. 21. 9. 79, AfP 80, 50 : OLG Karlsruhe B. 3. 2. 84, AfP 84, 114.
- 79) OLG Frankfurt U. 21. 6. 85, AfP 85, 289 : OLG Frankfurt U. 13. 12. 79, AfP 80, 38.
- 80) BGH U. 9. 12. 75, BHGZ 65, 325 BGH U. 3. 12.85, NJW 86, 981.
- 81)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4. 59.
- 82) OLG Hamburg U 25. 11. 82, 3 U 180. 동사건에서는 반론권자가 인용문에 대한 반론임을 반론문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론문지재청구가 기각되었다.
- 83) BGH U. 18. 10. 77 NJW 78, 751.
- 84) BGH U. 30. 6. 77, NJW 78, 371
- 85) OLG München U. 8. 8. 83, 21 U 3089 OLG Schleswig U. 28. 10. 74, AfP 75, 759.
- 86) Köbl, Entgegenungsrecht, 187 쪽
- 87)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7 ; OLG München U. 26. 2. 73, AfP 73, 483 , OLG München U31 7. 79, AfP 79, 364.
- 88) BGH U. 26. 6. 79. 열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피모사자를 곧바로 식별할 수 있으면, 그의 추수권은 침해된 것이며, 초상권은 인격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열시하였다.
- 89) OLG Hamburg U. 2. 6. 77, 3 U 4. 동판결에서 함부르크고등법원은 "한 국가의 외무장관 또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관의 대표자와 같이 피해자가 특별한 외교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문의 주의의무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공표된 사진을 통신사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편집인 또는 발행인의 반론문게재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90)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25 :OLG Hamburg U. 22. 1. 76,ArchPR 76(XXI), 55.

91) Löffler/Wenzel/Sedelmeier, Kommentar, §11 문단번호 61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35.

92) Köbl, Entgegenungsrecht, 139 쪽.

93)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 함부르크,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94)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5 쪽.

95) OLG Köln U. 23. 11. 71, AfP 71, 231 : OLG München U. 12. 5. 78, 21 V 2130.

96) OLG Hamburg U. 5. 8. 76, AfP 77, 245.

97)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87 , OLG Hamburg U. 14. 2. 80 AfP 80, 106.

98) OLG Düsseldorf U. 5. 8. 76, AfP 76, 194.

99) BVerfG 4. 11. 86, NJW 87, 239.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독자의 눈으로 반론권의 대상을 판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OLG München U. 13.2.87, 21 U 5627 판결도 "유발기사 및 반론권의 내용에 관한 해석은 평균적인 독자들의 이해력이 그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100) Löffler, Handbuch, 43 쪽.

101)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5 쪽.

102) LG Düsseldorf U.12.2.92,12 O 12. 동 판결에서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유발기사에 피해자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경우에는 반론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03) LG Oldenburg U. 11.11.82, AfP 83,299. 그러나, 단순히 유발기사의 내용을 보충하는 반론물은 적법한것으로 인정된다. OLG Hamburg U. 14. 5. 87, 3 U 22. 동판결에서 함부르크고등법원은 "유발기사가 독자들에게 전달하여준 적절하지 아니한 인상에 대하여 반론할 목적으로, 단지 유발 기사를 보충하는 사실주장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반론문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04)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90.

105) OLG München U. 25. 10. 76, 21 U 3254.

106)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6 쪽 : OLG Hamburg U. 25. 11. 82, AfP 83, 345.

107) OLG Hamburg, U. 2. 5. 68, ArchPR (XIII) 68, 68 : LG Hamburg U. S. 3. 71, AfP 71, 87.

108) BVerfG B. 8. 2. 83, AfP 83, 334.

109)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12 :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 37 쪽 .

110) OLG München U. 30. 6. 88, 21 U 2533 , OLG München U. 8. 6. 88, 21 U 3059.

111)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8 쪽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18.

112)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의 2.

- 113)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23.
- 114)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의 4.
- 115) OLG Berlin U. 18. 5. 84, 9 U 565.
- 116)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05 : BGB U. 12. 1.84, WM 84, 199.
- 117) OLG Hamburg U. 18. 10. 77, ArchPR(XXII)77, 26 : OLG Köln U. 6. 7. 71, AfP 71, 173.
- 118)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39 쪽 ; OLG Hamburg B. 23.4.70, AfchPR (XV) 70, 82 : OLG Köln U. 18. 4. 85, AtP 85, 151.
- 119) Löffler/Wenzel/Sedelmeier, Kommentar, 문단번호 11.79.
- 120) Löffler/Wenzel/Sedelmeier, Kommentar, 문단번호 § 11 11.101 : OLG Köln U. 18. 4. 85, AfP 85, 151.
- 121) 함부르크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 2 문.
- 122) OLG Hamburg U. 25. 10. 84, 3 U 149. 동 판결에서 함부르크고등법원은 "'반론문이 유발기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다'는 함부르크 출판법의 규정은 반론문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론문이 허용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반론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유발기사에 포함된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간략한 답변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지면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반론문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123)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98~246 : OLG Hamburg U. 19.1. 86, AfP 86, 137 : OLG Hamburg U. 14. 5. 87, AfP87, 625 : OLG Frankfurt U. 4. 8. 88, 16 U 69.
- 124) OLG Hamburg U. 18. 11. 65, MDR 66, 595 ; OLG Hamburg B. 22. 8. 74, ArchPR (X I X) 74, 111.
- 125) OLG München U. 1. 8. 83, 21 U 2707; OLG Cello U. S. 8. 87, NJW-RR n8, 956.
- 126) OLG München U. 8. 8. 83, 21 U 3089 : OLG Hamburg U. 11. 11. 82, AfP 83, 289.
- 127) OLG Hamburg, U. 29. 9. 77, AfP 78, 155.
- 128) OLG Köln, U 23. 11. 71, AfP 72, 231 , OLG Düsseldorf, U. 28. 7. 76, AfP 76, 194 OLG Hamburg B. 10.2.82, AfP 82, 232 : OLG Köln 10.1.89, AfP 89, 565.
- 129)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83~II. 84 : LG Oldenburg U.26.9.85 AfP 86, 299.
- 130) LG Hamburg B. 6. 2. 70, AfP 71, 86.
- 131) OLG München U. 11. 7. 83, 21 U 2514 : OLG München U 8. 3. 85, 21 U 1854 ;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17 쪽.
- 13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2 항의 3, 함부르크 출판법 제 10 조.
- 133) BGH 10. 3. 64, NJW 64, 1132.
- 134)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132.
- 135) OLG Hamburg B. 9. 5. 74, ArchPR 74(XIX) 113 LG Oldenburg U.25.11.85, AfP 86, 84.

- 136) OLG Hamburg B. 24. 5. 72, AfP 73, 388 : OLG Hamburg U. 22. 1. 76, ArchPR 76 (XXI) 55~56 : OLG Düsseldorf U. 16. 1. 85, AfP 85,68.
- 137) OLG Hamburg B. 9. 5. 74, ArchPR 74 (XIX)113 : OLG München U. 31. 7. 74, ArchPR 74 (XIX)112.
- 138) 반론문을 게재하면서 유발기사의 표제를 다시 붙인 경우, 이는 "반론문에 대한 변과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재게재판결이 날 정도로 반론문의 게재시 표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여 왔다. OLG Hamburg B. 10. 10. 83, 3W 122. 그러나 최근에는 "반론문의 내용에 반론이라는 표시가 충분히 나타날 경우, 굳이 '반론문'이라는 표제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LG Köln U.22.7 92,28 0 269.
- 139) LG Oldenburg U.25. 11.85, AfP 86,84, OLG Hamburg U. 19. 1. 86, AfP 86, 137
- 140) OLG Karlsruhe U. 11. 2. 77, AfP 77, 356.
- 141) Seitz /schmidt /sedelmei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61
- 142)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40.
- 143) OLG Köln U. 23. 9. 75, AfP 76, 132 OLG München U. 30. 9. 88, 21 U 3503.
- 144) OLG Karlsruhe 6. 11. 92, 15 U 249~292.
- 145)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3 항.
- 146) OLG Hamburg B. 22. 3. 84, AfP 84, 115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45.
- 147) OLG Frankfurt U. 2. 3. 82, AfP 83, 279 : OLG München U. 9. 5. 86, 21 U 1988 , OLG München U. 13.2. 87, AfP 87, 604.
- 148) BGH U. 31. 3. 65, NJW 65, 1230: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68.
- 149)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의 2.
- 150) OLG Hamburg B. 10. 10. 83, AfP 84, 39 : OLG Hamburg U. 22. 1. 76, ArchPR 76 (XXI) 55.
- 151) Dewal1, Gegendarstellungsanspruch, 45 쪽 .
- 152)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145.
- 153)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 153 : BGH U.10. 3. 64, NJW 64, 1132.
- 154) OLG München U. 18. 12. 69, ArchPR 69 (XIV)76 : OLG Hamburg U. 22. 1. 76, ArchPR 76 (XXI) 29.
- 155) OLG Düsseldorf U. 11. 6. 87, WRP 88, 245 OLG Düsseldorf U. 29. 1. 87, WRP 87, 271.
- 156) Köbl, Entgegenungsrecht, 152 쪽
- 157) Löffler, Handbuch, 문단번호 30.
- 158) 이러한 규정들이 기본법 제 72 조, 74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헌법상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Löffler 와 Wenzel 은 이들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 년 주법상의 절차규정도역시 출판법 방송법 매체법의 일부이며, 그것은 기본법 제 74 조 제 1 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인정된다"며 합헌판결을내려 이제는

이러한 논의가 사라졌다. BVerfG B. 14. 6.70, NJW 78, 1911 : BVerfG B. 8. 2. 83, 83 BVerfGE 63.

159) 각 주의 관계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델-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 :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본업소송배제, 바이에른주 출판법 제 10 조.규정없음, 베를린과 브레멘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 :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본안소송배제, 함부르크 출판법 11 조제 4 항과 헤센주 출판법 제 10 조 제 4 항 :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과 니더작센주 출판법 제 11 조 제 4 항 :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민소법제 926 조 적용배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짜-르란트주,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 출판법 제 1 조 제 4 항 : 민소법상의 가처분준용, 본안소송배제.

160) OLG Frankfurt U. 21. 6. 85, AfP 85, 288 ; OLG München U 7. 7 89, 21 U 3382.

161) BayObLG U. 10. 7. 58, BayObLGZ 58, 189 ; OLG Frankfurt U. 27. 10. 59, NJW 60, 2059.

162)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51 쪽 : Wenzel, Das Recht, 문단번호 11.81.

163) OLG Köln B. 11. 10. 84, AfP 84, 243 ; OLG Koblenz B. 22. 7 80, NJW 80, 2588.

164)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508.

165) 사본도 가능하다.

166) OLG Hamburg U. 18. 11. 65, ArchPR 65(X)51.

167) 바이에른주 출판법 제 10 조, 독일민법 제 812 조, 제 823 조, 제 840 조, 제 847 조, 제 1004 조.

168) OLG Düsseldorf U. 22. 1. 92, 15 U 225. 동 판결에서 뒤셀도르프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환사절차의 내용을 그 고용주에게 통고하여 주는 행위는 원고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중지청구권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69) BVerfGE 7, 198 : BVerfGE 66, 116 BVerfGE82, 272 BVerfGE 85, 1.

170)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과 일반대중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에는 중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BVerfGE 85, 94. BVerfGE 50, 234. 예를 들어 동독의 수상을 지낸 호네커(Erich Honecker)가 1992 년 재판받을당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호네커가 법정사진택영 및 교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호네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일반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충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중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BVerfG U. 11. 11. 92, 1BvR 1595.

171) BGH . 19. 12. 78. 동 판결에서 연교대법원은 「원고들의 전화를 도청하여 신문이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침해이므로, 장재중지가처분신청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172) BGH U. 6. 4. 76, AfP 76, 75.

173) BGH U. 6. 4. 76, BGHZ 66, 182~ 195.

174) BGH U. 30. 1. 79, AfP 79, 307.

175) LG U. 10. 6. 77, 78 D 405. 동 판결에서 쾰른지방법원은 「대중사회에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노경료산정에는 인격권침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176) LG Nürnberg U. 26. 5. 83, 4 D2s47. 동 판결에서 뉘른베르크지방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인 주장에 대한 취소청구권은 반론문의 게재를 승낙하였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현재 계속되고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문의 장재요구와 취소청구권이 병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화여대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연수
- 저서: 「미국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정정보도 청구권에 관한 소고」, 「종합유선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외
- 현재 서울 시립대 강사